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33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 박수영·서천호·정성국

천하람 · 김기현 · 진종오

김석기 · 김종양 · 권성동

이종욱 · 최은석 · 이인선

인요한 의원(13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더 커지고 있음. 특히, 폐업 발생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4년 상반기 약 6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764건 늘어나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행법은 2017년 일부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정하여 사업소득 금액이적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개정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사업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

현 행		개 정(안)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이하	9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u>6천만원 ~ 1억5천만원</u>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u>1억5천만원 초과</u>	300만원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1항제1호 중 "4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5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천만원 초과 1억원"을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으로,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		
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			
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			
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			
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			
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 로 한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u>4천만원</u> 이하인 경우: <u>50</u>0만원
-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 ② ~ ⑧ (생 략)

1
<u>6천만원</u> <u>900</u>
만원
2
<u>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u>
<u>600만원</u>
3
<u>1억5천만원</u> <u>300</u>
<u>만원</u>
② ~ ⑧ (현행과 같음)